特許制度의 国際化 動向

李 鉉 澈

1. 特許制度와 技術移轉의 国際動向

世界 經濟發展의 歷史는 同時에 技術革新의 歷史이기도 하다. 技術革新의 源泉인 發明은 特許制度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保護, 奬勵되어 왔다. 世界에서 처음으로 特許制度가 싹튼 것은 1474年으로 當時의 베니스共和國에서였다고 한다. 또한, 中世의 英國에서는 職工組合이며 徒弟制度였던 길드制度에 의해 就業 및 職級段階가 매우 엄격하게 規制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럽大陸으로부터 渡來한 優秀한 技術者를 받아들이는데 큰 障害要因이 되었다. 따라서 招聘한 外國技術者에게는 길드에 加入하지 않더라도 英國內에서 營業을 할 수 있는 特權을 주도록 했다. 16세기 엘리자베드一世의 時代에 이르러 이들에게 專賣特許權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特許制度에 近似하게 發展되었다.

그후 産業革命으로 모든 나라가 近代産業体制로 發展함에 따라 이 特許制度를 그나라 나름대로 確立하여 運營하기에 이르렀다.

世界第2次大戰 以後 戰後의 復興이 끝나고, 技術革新時代에 들어서면서 研究開發은 企業속에 制度化되고, 技術의 社會的 임팩트가 廣範圍하여 甚大化 되어 가며, 또한 發明의 國際的 保護의 必要性이나 技術의 國際市場化 發達 등에 의해 特許行政의 國際化가 要請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50年代까지 開發途上國들의 經濟發展의 重要한 要因이라 여겨졌던 資本問題가 全部라고 생각되어 오던 것이 60年代에 들어오면서 技術問題로 焦點이 바뀌기 시작했고, 특히 最近에 이르러서는 先進工業國의 技術이 開發途上國 으로 移轉함에 있어서의 特許가 미치는 影響에 대해 深刻하게 論議되게 되었다. 이 問題는 第 16次 UN總會에서 「開發途上國에의 技術移轉에 있어서의 特許의 役割(The Role of Patents in the Transfer of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이라는 議題의 決議案이 콜롬비아와 브라질에 의해 共同提案된데서 비롯되었다. 이 提案의 要旨는 現存의 特許制度가 開發途上國 技術의 發展을 저해하고, 또한 外國特許에 대한 實施料支拂이 開發途上國의 貧乏한 外貨事情에 過重한 負擔을 주고 있는 點을 指摘하여 開發途上國의 立場에서 現在의 特許制度를 國際的으로 再檢討할 것을 提案한 것이다.

이 콜롬비아, 브라질의 提案은 상당히 修正되어, 결국 「開發途上國에의 技術移轉에 있어서의 特許의 役割」이라는 題目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決議가 採擇되기에 이르렀다.

즉, UN事務總長에 대해 아래의 4點에 관한 報告書를 作成해서, 工業開發委員會(UNIDO), UN經濟社會理事會(ECOSOC) 및 第 18次UN總會에 提出하도록 要請했다.

(1) 開發途上國의 經濟에 特許制度가 미치는 影響에 대한 研究

(2) 外國特許의 取扱에 重點을 둔 先進國 및 發展途上國 特許法制의 調査

(3) 經濟開發과의 관련에 있어서 特許法制의 特徵 分析

(4) 現存 國際條約 및 開發途上國의 특수한 立場을 고려하고, 또한 現存의 「파리同盟」 機構를 活用하여 特許權의 提供, 保護 및 使用에 따르는 여러 問題를 檢討하기 위한 國際會議를 開催하는 일의 可否에 관한 勸告

*KORSTIC 第1技術情報部長

이 決議에 따라서, 1962年 10月에 UN事務總長은 各國 政府, 政府間 機關에 質問書를 送付하여, 이것들의 回答을 종합해서 1964年 3月에 「開發途上國에의 技術移轉에 있어서의 特許의 役割」이라는 題目의 UN事務總長報告書가 作成되었다. 그리하여 이 報告書는 이해에 工業開發委員會(UNIDO) 및 UN貿易開發會議(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UN經濟社會理事會(ECOSOC)에 提出되어 檢討되었다.

이것이 現在의 世界知的所有權機關(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와 UNCTAD가 「파리條約의 改正」에 관한 問題를 다루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64年 3月의 第一次 UNCTAD總會에서는 開發途上國의 援助에 관한 問題가 廣範하게 취급되었으나 그 一環으로 技術移轉에 관한 問題가 UNCTAD第3委員會(援助 및 貿易外收支)에서 討議되었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決議가 이루어졌다.

(1) 先進國은 自國의 特許 및 非特許技術의 所有者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特許나 노우하우, 技術資料와 其他의 新技術一般을 開發途上國에 提供하도록 推奬하고, 또한 實施許諾을 받기에 必要한 資產援助를 開發途上國에 有利한 條件으로 提供하여야 한다.

(2) 開發途上國은 工業技術의 保護를 위해 立法的, 行政的 措置를 採擇하여야 한다.

(3) UN機關 및 工業所有權保護同盟(파리同盟) 등의 關係機關은 產業技術의 國際移轉에 관한 立法을 開發途上國의 實情에 부합시키도록, 또한 가능하다면 이 分野에서 關係國家들끼리 國際協定을 締結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한 可能性을 檢討하여야 한다.

(4) UN內에 技術情報 및 노우하우, 또 이것들의 移轉에 관한 情報 등을 提供하는 機關을 關係 國際機關과의 協力에 의해 設置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두 會議에서의 討議를 발판으로, ECOSOC에서는 UN에서의 討議를 綜合해서 開發途上國 11個國의 共同提案으로 된 決議를 採擇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을 促進하기 위해서는 先進國의 應用科學에 관한 知識과 經驗을 活用하는 것이 극히 必要하며 그들 情報의 廣範한 國際交流는 開發途上國의 持續的인 經濟發展에 큰 效果를 가져다 준다.

(2) 以上의 觀點 및 UN報告書와 UNCTAD에서의 勸告와를 고려하여 UN事務總長에게 다음 事項을 行하도록 要請한다.

① 技術移轉에 관한 立法을 開發途上國의 實情에 맞게 할 可能性을 檢討하고 技術資料 및 노우하우의 開發途上國에의 移轉에 관한 情報를 提供하기 위해 새로운 情報서어비스機關을 設立할 것

② UN機關 및 關係國際機關의 사이에서 代表의 相互派遣 등 情報交換에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措置를 취해서 그 結果를 ECOSOC과 其他 國際機關에 報告할 것

③ UNCTAD의 勸告事項에 관해서 취해진 措置를 다음 ECOSOC에 報告할 것

이 決議는 現在의 UNCTAD에서의 「CODE OF CONDACT」 및 WIPO와 UNCTAD의 「파리條約의 改正」에 관한 檢討와 連結되는 것이다.

그러나, 1960年代 즉 「第1次UN開發의 10年」에서는 開發途上國에의 技術移轉에 관해 거의 具体的인 國際的 액숀이 취해지지 않은 채 끝나버렸으며, 1970年代에 들어와서 비로소 急速한 進展을 보이게 되었다.

1972年 5月 第3次UNCTAD總會는 「技術移轉에 관한 決議」를 採擇했다.

이 決議는 技術移轉에 관해 매우 重要한 두가지 點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技術移轉이 關聯된 商業上 및 法制上의 局面을 포함한 先進國으로부터 開發途上國에의 特許技術 및 非特許技術의 移轉을 規制하는 새로운 國際法制를 위한 基礎研究를 할 것」이다.

이 問題는 그後 1973年 2月에 열린 「技術移轉에 관한 政府間 그룹」(IGG)의 第2次會期에서 취급되어 그 檢討結果가 같은 해 9月의 貿易開發理事會(TDB)의 決議로 「開發途上國에의 技術移轉 및 그 分野에서의 行動規範(CODE OF

CONDACT)」을 採擇하는 基礎가 되었다. 즉, 이로 인해 1974年 6月 UNCTAD事務局이 「技術移轉에 관한 國際的 行動規範(CODE OF CONDACT)의 可能性 및 實現性(TD/B/AC, 11/22)」이라는 報告書를 作成하기에 이르렀다.

두번째로 重要한 第3次UNCTAD總會의 決議는 「開發途上國에 대한 技術移轉에 있어서의 特許의 役割」에 관한 UN事務總長報告를 最新의 것으로 하는 研究를 할 것과 特許制度의 將來의 改正과 관련하여 이 役割을 한층 理解시키는데 着眼하여 이 移轉에서의 國際特許制度의 役割을 研究하는데 각별한 고려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決議에 따라 1974年 4月에 UNCTAD와 WIPO와 UN經濟社會局(U. 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이 共同으로 「發展途上國에의 技術移轉에 있어서의 特許의 役割(TD/B/AC. 11/19)이라는 報告書를 作成하였다.

이 報告書는 1964年 「開發途上國에의 技術移轉에 있어서의 特許의 役割」이라는 題目으로 UN事務總長에 의해 作成된 報告書를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더욱 充實하게 한 것이며, 그 內容은 ① 特許制度의 顯著한 特徵, ② 特許制度와 經濟發展의 關聯을 開發途上國에 대해서 考察하고, ③ 將來의 特許制度의 改正에 관련된 主要한 事項이 提示되어 있고, ④ 附屬資料로 71個國에 있어서의 特許法制의 主要한 規定이 그 重要性의 觀點에서 要約되어 있다.

이 報告書가 作成, 公表된 것을 契機로 開發途上國의 技術移轉問題는 급속한 進展을 보였다.

즉, WIPO에서는 1974年 6月에 열린 WIPO 調整委員會에서 印度가 「UNCTAD와 WIPO의 共同專門家會議를 設置하여 파리條約이 開發途上國의 利益이 되도록 하기 위한 機能을 現在 다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 檢討하고, 利益이 되는 方向으로 非相互主義的 特惠規定을 作成하기 위해 豫算上의 準備措置를 강구하도록 事務局長에게 要請하는 勸告案」을 提出했다. 이것을 받아 同年 9月의 調整委員會에서는 「파리同盟의 加盟國 및 非加盟國으로부터의 政府專門家로 이루어진 暫定委員會를 創設하여 파리條約의 改正問題를 全体的인 觀點 그중에서도 특히, 開發途上國에 대해 特別한 利益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追加規定을 檢討할 것」, 또한 事務局長은 技術移轉에 관심이 있는 UN機關, 특히 UNCTAD와 協議할 것」을 決定했다. 이로 말미암아 1975年 2月에 第1次 파리條約改正을 위한 政府專門家部會가 열렸다. 여기에서 今後는 內國民待遇, 特許의 獨立, 特許發明의 不實施와 強制實施, 非相互的 特惠措置, 技術援助, 製法特許의 保護範圍, 全會一致原則 등에 대해 檢討할 것에 合意함과 동시에 파리條約의 基本原則을 尊重하고 또한 開發途上國의 事情을 고려할 것을 配慮하여 事務局長은 上記한 諸點 및 이와 관련된 問題에 관한 可能한 몇가지 解決案에 대한 검토를 行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UNCTAD에서는 이 「開發途上國에의 技術移轉에서의 特許制度의 役割」에 관한 報告書가 1974年 7月의 第3次 技術移轉에 관한 政府間그룹會議에 提出 檢討되었다. 그리하여 이 會議에서 다음과 같은 決議가 있었다.

그 決議는 UNCTAD事務局長이 이 報告書를 UNCTAD의 加盟國政府에 送付하여 意見을 聽取한 다음 專門家그룹을 招集하여 開發途上國에 특별한 必要性이 反映되도록 特許制度 改正의 可能性을 포함해서 그 制度의 보다 좋은 理解를 주기 위해 開發途上國의 發展過程에 적합한 國際特許制度의 모든 관련된 觀點을 研究할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파리同盟條約의 改正」의 問題는 WIPO와 UNCTAD의 双方이 각각 獨立的으로 검토하게 되었으나 이點에 대해 이 決議에서는 「파리同盟條約의 改正問題」 중에서 WIPO는 法律的 및 技術的인 面(Legal and Technical Aspects)에서 검토하고, UNCTAD는 經濟的, 商業的 및 開發的인 面(Economic, Commercial and Development Aspects)에서 검토하기로 分擔했다. 끝으로 이 決議는 UNCTAD의 貿易開發理事會의 下部機關에서 政府間 專門家그룹의 報告를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적당한 액손을 勸告하도록 要求하고 있다. 그후, 8月의 TDB會議에서 政府間 專門家그룹을 廢止하고 技術移轉에 관한 常設委員會(Commitee on Transfer of Technology)를 設立할 것을 決定했다.

以上 技術移轉에 관한 從來의 經緯와 最近의

動向에서 主된 것만을 要約해 紹介했으나, 그 프로세스는 複雜하다. 새삼 다음에 現狀을 要約해 보면,

1) UNCTAD는 「Code of Conduct에 관한 研究」 및 「파그워쉬草案」을 素材로 해가면서 「特許技術 및 非特許技術의 移轉에 관한 國際的인 Code of Condact의 Outline作成에 着手하고 있다.

2) WIPO는 「開發途上國에의 技術移轉에 있어서의 特許制度 役割」의 分析을 바탕으로 하여 파리同盟條約 改正의 검토에 着手하고 있다.

3) UNCTAD는 또한 「開發途上國에의 技術移轉에 있어서의 特許制度의 役割」을 바탕으로 하여 經濟的, 商業的, 開發的 觀點에서 파리同盟條約 改正을 檢討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狀況下에 우리나라는 UN에도 加入하고 있지 않으며 WIPO에도 加入되지 않고 있으나 國際化의 물결에서 잠시도 떠날 수 없는 現實에서 볼 때 우리나라로서도 이러한 動向에 대해 그 背景과 問題點을 十分 理解하고 적절히 對處해 나갈 必要가 있다.

2. 特許協力条約(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위의 UN機構를 中心으로 한 特許制度의 再檢討가 行해지고 있는 한편, 特許制度의 國際化를 위한 각 나라들의 움직임도 아울러 活潑하게 움직이고 있다. 즉 그 代表가 되는 것이 이른바 特許協力條約(以下 PCT로 씀)이다.

이 PCT는 美國이 主動이 되어 1970年6月 워싱턴에서 있은 外交會議에서 20個國이 PCT에 署名함으로써 비롯된다. 이 PCT는 最少限 8個國에 의한 批准書 또는 加入書의 寄託이 있은 後 3個月이 되어야 發效된다. 다만 8個國 중에서도 最少限 4個國은 特許活動의 水準에 있어서 定해진 條件을 갖춘 나라이어야만 한다. PCT는 現在 35個國이 서명하고 1975年 11月 美國이 批准하였고 1976年 7月에 西獨이 批准했으며 現時點에서 英國, 프랑스, 소련, 日本,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등 11個國 중에서 2個國이 批准하면 그로부터 3個月後에 條約의 效力이 發生하게 된다. 그 發效時期는 아마도 1978年쯤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一般的인 觀測이다.

PCT에 서명한 35개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美國, 英國, 西獨, 프랑스, 이탈리아, 日本, 소련, 알제리아, 브라질, 캐나다, 덴마아크, 핀랜드, 바티칸, 항가리, 에이레, 이스라엘, 노르웨이, 필리핀, 스웨덴, 스위스, 아랍聯, 유고슬라비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란, 코트디브와르, 룩셈브르크, 말라가시, 모나코, 네덜란드, 루마니아, 세네갈, 시리아, 토고.

PCT를 構想하게 된 表面的 理由는, 現在 特許制度를 保有하고 있는 나라의 數가 100餘個國이 되는데 그 法制가 나라마다 각기 다르며 特許許與節次, 方式 등이 複雜하여 出願人(특히 外國人)이 特許出願하는 데에 書類作成이나 그 費用이 많이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 苦衷을 덜어주자는 데에 있다 하겠다.

그러나 그보다도 科學技術이 進步됨에 따라, 그 技術的 內容도 複雜해지고 새로운 技術의 創出로 말미암아 特許出願件數도 每年 急增하는 한편 各國間의 技術交流도 빈번해져서 同一發明의 多數國에의 出願傾向이 현저해지자 이에 대한 對應策을 世界的 視野에서 강구하자는데 더 큰 目的이 있다.

特許制度 國際化의 終局的인 目標라면, 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의 發明이 創出되어 特許로 出願될 경우 한 나라에서만 通用되는 것이 아니라 世界 어느 나라에서도 同時에 效力이 認定되는 이른바 世界特許(Universal Patent)를 取得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 PCT의 內容은 規定된 方式을 갖춘 國際出願을 각각의 나라에서 國內出願으로 認定하는 것으로 單一의 世界特許는 아니며 實体面에서 본다면 各國의 特許法에 의해서 支配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PCT는 「파리條約의 強化」를 꾀한 特許制度의 國際化이며 單一特許의 存在를 認定한 EEC特許條約과는 그 內容이 判異하다.

그렇지만 PCT의 加盟國이 多數化 될 것이 豫想되며 現在 가장 오랜 傳統과 歷史를 갖고 普遍的으로 利用되고 있으며 有數한 多數國이 加盟(80餘個國)되어 있는 파리同盟條約에 바탕을

둔 國際出願루트(파리루트)가 한층 強化된 形이 되기 때문에 PCT가 發効하면 特許制度의 國際化에 미치는 影響은 實로 至大할 것이 當然하다.

PCT의 節次規定은 매우 소상하고 복잡하므로 자세한 說明은 紙面上 할 수 없고 간단히 그 主要 줄거리만 소개한다.

2.1 国際出願

PCT의 主眼點은 同一發明에 대해 多數國에 각각 出願함으로써 생기는 各國의 審査, 調査의 非經濟, 非能率을 國際協力으로 改善하고자 함에 있다. PCT는 原則的으로 파리同盟內에서 出發된 特別條約이므로 파리同盟條約의 効力을 조금이라도 變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파리同盟 加盟國이 PCT의 加盟國이 되며 PCT의 國際出願은 PCT加盟國의 國民이나 居住人이면 가능하나 PCT의 加盟國이 아닌 파리同盟 加盟國의 國民이나 居住人에 대해서도 PCT總會에서 國際出願할 權利를 부여할 수 있다.

PCT의 國際出願은 一定様式과 內容을 充足시킨 單一出願을 受理官署中의 한곳에 出願함으로써 出願人이 指定한 多數國에의 出願効力을 얻게 된다. 受理官署는 이 國際出願을 受理한 뒤 最少限의 條件이 充足되어 있으면 國際出願의 出願人資格이 認定되고, 定해진 言語로 쓰여진 國際出願이란 表示와 1個國 以上의 指定國表示, 明細書와 클레임이 있으면 適法한 出願日이 定해진다. 出願日이 定해지면 各 指定國에서 그 날짜로 事實上 國內出願한 것과 같은 効果가 생긴다. 이 寫本은 記錄原本으로 國際事務局에 調査用 寫本으로 國際調査機關에 보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記錄原本이 所定期限인 優先日로부터 13개월 以內에 國際事務局에 到着되지 않으면 國際出願은 取下된 것으로 간주된다. 受理官署에서는 方式審査도 해서 不備한 것은 1~2개월 以內에 出願人에게 補正시킨다. 出願人이 이 期間內에 補正을 해서 提出치 않으면 取下한 것으로 간주한다.

2.2 国際調査

國際調査는 多數國의 特許廳에서 重複된 先行技術의 調査에 대신해서 權威있는 國際調査機關으로 하여금 그 調査를 하게 하여, 各國 特許廳의 努力과 費用을 輕減시키고자 한 것이다.

國際調査機關으로 되려면 最少限 特許調査資料를 整備해야 하고 100名 以上의 能力이 있는 專任調査官이 確保되어야 한다는 條件이 따른다. 特許資料로서는 美國, 英國, 프랑스, 西獨, 스위스, 日本, 소련에서 發行되는 特許明細書 以外에 一定한 非特許文獻이 整備되어 있어야 한다.

國際出願의 調査用 寫本은 受理官署에서 國際調査機關에 發送되므로 國際調査機關은 이 寫本을 받은 다음 原則的으로 3個月 以內에 調査完了하여 報告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國際調査는 審査에 있어 利用될 수 있도록 많은 關聯된 先行技術을 찾아내는 것이 目的이며, 이 調査報告書에는 特許性을 判斷하는 內容의 意見은 一切 쓸 수 없고 다만 관련되는 先行技術文獻의 列擧만이 그 主要事項이 된다.

國際調査報告는 國際出願이 公開되는 言語로 作成된다. 즉 해당되는 國際出願의 言語는 英語, 獨語, 프랑스語, 소련語, 日本語 등이며, 그중 어느 言語등 해당되는 言語로 作成되지만 그 以外의 言語일 경우에는 國際調査報告는 英語로 作成해야 한다. 또한 英語 以外의 言語로 作成된 國際調査報告書는 國際事務局의 責任下에 英語로 번역된다.

國際調査報告書는 國際事務局에 보내지는 한편, 出願人에게도 發送되어 出願人으로 하여금 2個月 以內에 國際事務局에 대해 請求範圍의 補正書 및 補正說明書를 提出하게 되나 明細書 圖面의 補正은 이때 許用되지 않는다. 또 이 補正은 단 1回에 局限된다.

國際事務局은 國際調査報告書를 받고 出願人으로부터 請求範圍의 補正이 있으면 그것을 國際出願寫本과 함께 指定官署에 移送한다. 指定官署는 各國의 特許廳을 말하며, 移送된 出願은 國內段階에 들어가서 각 指定國의 法律에 準한 所謂 屬地主義 原則에 따라 特許性을 判斷받게 된다. 이때 國內段階에서 審査받으려면, 出願人은 優先日로부터 20개월 以內에 指定官署에 번역문과 國內料金을 納入하여야 한다. 파리條約에

서는 優先權을 主張하여 出願할 경우 優先日로부터 12個月 以內에 完了하여야 하지만, PCT에서는 20個月로 되어 있다. 國際豫備審査가 적용될 경우 選擇官署는 國際調査報告에다 國際豫備審査報告書가 添付되기 때문에 國內段階에 들어가려면 다시 5個月이 延長되어 優先日로부터 25個月이 된다.

2.3 国際豫備審査

國際豫備審査는 단순한 公知資料의 調査뿐만 아니라 新規性, 進步性, 産業上 利用 可能性 등 特許要件까지 判斷하여 出願人에게는 特許의 判斷, 選擇國에게는 그나라의 審査業務의 輕減을 취지로 設定된 것이다. 그러나 이 節次는 PCT 加盟國과 出願人에 의해 선택적으로 적용되거나, 加盟國이 이 節次의 적용을 留保시킬 수가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이 節次를 採用할 경우에도 出願人의 希望여부로 선택되게 된다.

2.4 国際公開

國際事務局은 指定官署에의 傳達과 병행해서 國際出願을 公開할 준비를 진행시켜 優先日로부터 18個月 經過後 즉시 公開한다. 이것은 現在 實施하고 있는 西獨, 日本 등의 早期 公開制度와 같다. 다만 出願人의 희망에 따라서는 그 以前에라도 公開될 경우가 있으며, 公開言語가 國際出願時의 그 言語로 公開된다. 그러나 英語 以外로 公開될 때는 國際調査報告와 要約에 대해서는 英文도 同時에 公開된다. 國際公開는 팜플렛形式으로 製作되어 表紙에는 明細書의 請求範圍, 圖面, 國際調査報告와 內容은 出願人이 提出한 請求範圍의 補正과 說明書가 편집된다. 이 國際公開는 國際事務局에 의해 統一로 公開되며 英語로 된 要約이 반드시 첨부된다.

以上으로 PCT의 節次에 대해 간략하게 主要한 要點만 소개했으나 이것이 1, 2年後에 發效되면 特許의 國際化에 많은 問題가 提起될 것이 예상된다.

우선 큰 問題로는 PCT가 出願人 本位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海外出願이 쉽게 된다는 企業에 있어서의 利點도 있으나, 同時에 海外企業으로부터의 特許攻勢가 더욱 強化될 것도 아울러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先進工業國의 企業은 有利하나, 開發途上國의 企業에게는 不利할 可能性도 엿보인다. 그다음의 問題點은 PCT루우트가 생기면 從來의 海外出願루우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並存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루우트를 選擇할 것인가 하는 課題가 대두될 것이다.

즉,

① 國內出願을 한 다음 優先日로부터 12個月 以內에 여러 外國에 出願하는 從來의 파리條約의 루우트

② 國內出願을 한 다음 優先權主張期間 內에 優先權을 主張하는 PCT루우트의 國際出願

③ 直接 國際出願을 하는, 國內出願을 거치지 않는 PCT루우트

등이 생길 것이며 각각의 루우트의 所定期間과의 관계와 照會해서 해당發明의 評價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國際公開의 效果, 外國出願의 費用 등의 관계되는 것의 검토가 必要하게 될 것이다.

어쨋던 PCT의 發效에 따라 從來보다도 質이 높은 特許管理가 要求될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우리나라의 立場으로는 아직 WIPO에도 加盟되어 있지 않고, PCT에도 加盟되어 있지 않은 現實이라서 他山之石으로 여기기 쉬우나, 輸出立國을 指向하고 GNP의 80%가 貿易에 依存하고 있는 處地에 입각해서 볼 때, 눈앞에 닥아선 PCT의 發效가 결코 他山之石만은 아닐 것이다. 特許廳을 비롯한 關係當局은 물론이려니와 産業의 主人公인 企業도 이에 대해 소홀히 할 수 없는 重要한 問題인 것을 再三 提起한다.